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 대책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포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79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 대책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포함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4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과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 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 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 대책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포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제5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u>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기본계획¹⁾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변경한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①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에 관한 사항, ②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④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

1)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나,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2)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⑤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⑥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음.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7조제2항 각 호)]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³⁾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분산에너지⁴⁾ 생산·소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3) 2023. 6. 13.에 제정(법률 제19437호)되고 2024. 6. 14.부터 시행되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관리강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4)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개정안은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제출되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에 필요한 지원시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고⁵⁾,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⁶⁾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효과적인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 및 분산에너지

5) 참고로,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지역 지자체에 LPG 저장탱크, 배관망 등 LPG 공급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LPG 배관망구축사업’이 시행 중임(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 근거).

6) 참고로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례가 있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과주시 에너지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 에너지 취약지역의 존재 여부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제2호의2(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2호(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음.⁷⁾

7) 제2호의2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u><신 설></u>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2의2.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u>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u>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u><삭 제></u>

문 의 처
02)6788-5536